

II. 퇴직연금 운용현황 및 시장평가

1. 시장현황

가. 퇴직연금사업자 현황

국내 퇴직연금사업자는 2005년 12월 42개의 금융회사 등록을 시작으로 2009년 9월말 현재 53개사 금융회사가 등록되어있다.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4개사, 증권이 17개사, 생보사가 13개, 손보사 9개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퇴직연금사업은 사업성격상 크게 운영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사업영역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를 전문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운영·자산관리업무의 차별화된 등록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53개사 모두 운영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에서는 구조적으로 서비스의 차별화 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배구조상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표 II-1>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영업무

| | 운영관리업무 | 자산관리업무 |
|-------------------|---|---|
| 퇴직연금 사업자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립금운용방법(금융상품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 제공)- 연금제도의 설계 및 계리 (DB형의 경우)- 적립금운용현황의 기록보관 통지- 운용지시 전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 보관 및 관리-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

즉 자사의 역량에 맞는 분야에 선택적으로 진출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일부 기록관리(RK: Record Keeping)업무를 제외한 전 분야에 진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선진 보험회사의 경우, 자사의 역량을 고려한 일부 특화된 서비스 창출에 주력하는 등 특정분야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시장 선점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동원함으로써 치열한 퇴직연금 시장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은 규모 경제적 성격이 적용되는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⁸⁾에서 연금제도 도입초기 다수의 금융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경우 재무력, 서비스 등 운영능력이 부실한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하였다. 실제 국내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에서도 이미 골드브릿지증권 등은 시장진출 2년 6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일부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는 도입된 지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도 경영성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표 II-2>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현황(2009년 9월 기준)

| 구분 | 등 록 현 황 |
|----|--|
| 은행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제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 수협, 기업, 산업 (14개사) |
| 생보 | ING, 교보, 금호, 녹십자, 대한, 동부, 동향, 메트라이프, 미래에셋, 삼성, 신한, 하나 , 흥국 (13개사) |
| 손보 | 그린, 동부, 롯데, 메리츠, 삼성, LIG, 제일, 한화, 현대 (9개사) |
| 증권 | HMC투자 , NH투자, SK증권 , 교보, 신한, 대신, 대우, 동양증권, 미래에셋, 삼성, 신영, 우리투자, 하나대투, 하이투자, 한국투자, 한화 , 현대 (17개사) |

주 : 실적 없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진하게 표시
 자료 : 금융감독원

8) 퇴직연금제도의 규모 경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지만, 퇴직연금사업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초기에 과도한 사업비용(RK비용 등)이 소요되어 평균비용이 높지만 퇴직연금 수탁 규모가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나. 금융권역별 적립금 운용 현황

근로자의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업장 기준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은 12%(2009.9말)로 성장하였으나 퇴직연금 가입률 및 적립 수준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2009년 9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액은 9조 1,047억원이며, 전체 5인이상 사업장의 12.0%인 518,716개소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규모면에서는 양적 확대를 이루고 있다. 제도별 적립은 확정급여형(이하 DB형) 퇴직연금이 전체 적립금에서 64.4%의 비중을 차지하여 적립금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확정기여형(이하 DC형) 퇴직연금이 26.7%, 개인퇴직계좌(IRA)⁹⁾가 8.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역별 적립은 은행이 전체 적립금에서 52.5%의 비중을 차지하여 적립금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험사가 35.0%, 증권사가 12.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3> 퇴직연금 사업자별 누적적립금

(2009년 9월말 기준, 단위: 억원, %)

| 권역 | DB형 | | DC형 | | IRA기업형 | | IRA개인형 | | 전체 | | |
|------|--------|------------------|--------|------------------|--------|------------------|--------|------------------|--------|------------------|------|
| | 금액 | 비중 ¹⁾ | 금액 | 비중 ¹⁾ | 금액 | 비중 ¹⁾ | 금액 | 비중 ¹⁾ | 금액 | 비중 ²⁾ | |
| 적립금 | 58,653 | 64.4 | 24,268 | 26.7 | 3,073 | 3.4 | 5,053 | 5.5 | 91,047 | 100.0 | |
| 금융권역 | 은행 | 27,576 | 57.7 | 13,818 | 28.9 | 2,998 | 6.3 | 3,378 | 7.1 | 47,770 | 52.5 |
| | 생보 | 21,701 | 81.6 | 3,585 | 13.5 | 58 | 0.2 | 1,242 | 4.7 | 26,586 | 29.2 |
| | 손보 | 4,018 | 75.7 | 1,121 | 21.1 | 8 | 0.1 | 164 | 3.1 | 5,311 | 5.8 |
| | 증권 | 5,358 | 47.1 | 5,744 | 50.5 | 9 | 0.1 | 269 | 2.3 | 11,380 | 1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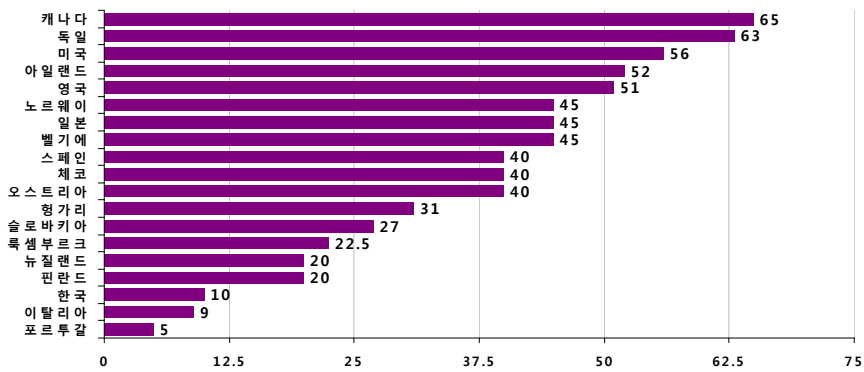
주 : 비중1)은 권역 내에서의 비중, 비중2)는 권역간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그러나 이처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와 퇴직연금 가입률 면에서 뚜렷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퇴직연금가입률에 비

9) IRA기업형 및 IRA개인형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이 60% 이상인 국가는 캐나다·독일이며, 다음으로 50% 이상이 미국·아일랜드·영국, 45% 이상이 노르웨이·일본·벨기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퇴직연금 가입률이 최하위 권의 국가로 분류되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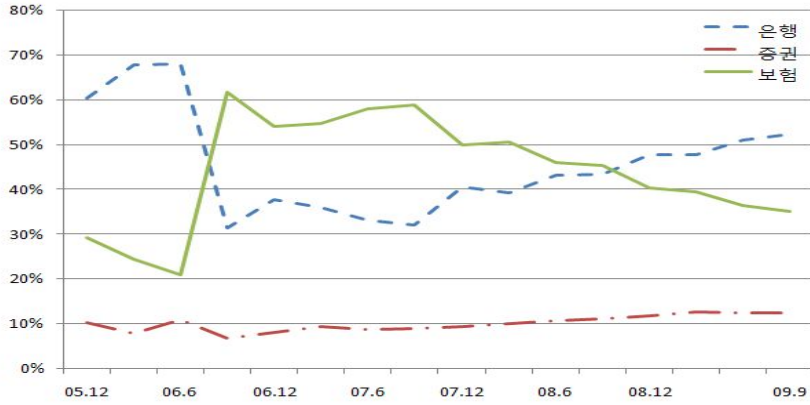
<그림 II-1>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가입률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보험권이 2006년 9월 61.7%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은행권은 2006년 9월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08년 10월 이후 보험권을 추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증권사는 2009년 6월 현재 12.5%를 나타냄으로써 점진적으로 적립금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1-2>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 추이



다음으로 퇴직연금사업자별 적립금 운용실태를 보면 원리금보장형은 은행, 보험, 증권 순으로, 실적배당형은 은행, 증권, 보험 순으로 운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II-4> 퇴직연금사업자별 적립금 운용실태

(단위: 십억)

| 구 분 | | 2005.12 | 2006.12 | 2007.12 | 2008.12 | 2009.9 |
|------------|----|--------------|----------------|------------------|------------------|------------------|
| 원리금 보장형 | 보험 | 5 | 355 | 1,102 | 2,491 | 3,003 |
| | 은행 | 2 | 198 | 767 | 2,618 | 4,147 |
| | 증권 | 0.1 | 12 | 59 | 313 | 598 |
| 소계 | | 7 (44.2%) | 564 (74.6%) | 1,928 (70.0%) | 5,422 (82.0%) | 7,747 (85.1%) |
| 실적 배당형 | 보험 | 0.1 | 6 | 116 | 117 | 173 |
| | 은행 | 0.4 | 34 | 196 | 359 | 523 |
| | 증권 | 1 | 39 | 144 | 283 | 444 |
| 소계 | | 1 (6.4%) | 79 (10.4%) | 457 (16.6%) | 759 (11.5%) | 1,141 (12.5%) |
| 기타 | 보험 | - | 48 | 158 | 60 | 14 |
| | 은행 | 7 | 55 | 154 | 186 | 107 |
| | 증권 | 1 | 10 | 59 | 184 | 96 |
| 기타 합계 | | 8 (49.4%) | 113 (15.0%) | 370 (13.4%) | 431 (6.5%) | 217 (2.4%) |
| 합계 | | 16 | 757 | 2,755 | 6,612 | 9,105 |

자료 : 금융감독원(각 월호)

특히 실적배당형 상품의 적립금 운용 비중은 보험권 <은행권 <증권사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증권사는 실적배당형 상품중심의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안전성 확보측면에서 채권형 펀드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은행 및 증권의 경우 예·적금 중심의 원리금보장상품, 생손보사의 경우 금리확정형 중심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5> 참조).

<표 11-5> 적립금 운용상품별 퇴직연금사업자 운용실태

(단위: 억원)

| 구 분 | 은행 | | 증권 | | 보험 | | 전체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원리금보장 | 예·적금 | 41,329 | 86.5% | 2,363 | 20.8% | 2,006 | 6.3% | 45,697 | 50.2% |
| | 금리확정형보험 | 81 | 0.2% | 110 | 1% | 18,001 | 56.4% | 18,193 | 20% |
| | 금리연동형보험 | 57 | 0.1% | 14 | 0.1% | 9,792 | 30.7% | 9,864 | 10.8% |
| | 국공채 | 0 | 0% | 52 | 0.4% | 0 | 0.0% | 52 | 0.1% |
| | 원리금보장ELS | 0 | 0% | 3,438 | 30.2% | 229 | 0.7% | 3,667 | 4% |
| 소 계 | 41,467 | 86.8% | 5,977 | 52.5% | 30,029 | 94.1% | 77,473 | 85.1% | |
| 실적배당 | 주식형펀드 | 267 | 0.6% | 75 | 0.7% | 26 | 0.1% | 367 | 0.4% |
| | 혼합형펀드 | 113 | 0.2% | 17 | 0.1% | 3 | 0.0% | 133 | 0.1% |
| | 채권형펀드 | 4,852 | 10.2% | 4,053 | 35.6% | 560 | 1.8% | 9,465 | 10.4% |
| | 기타펀드 | 0 | 0% | 297 | 2.6% | 0 | 0 | 297 | 0.3% |
| | 실적배당형보험 | 0 | 0% | 0 | 0% | 1,144 | 3.6% | 1,145 | 1.3% |
| 소 계 | 5,232 | 11% | 4,441 | 39% | 1,733 | 5.4% | 11,406 | 12.5% | |
| 기 타 | 1,070 | 2.2% | 961 | 8.5% | 136 | 0.4% | 2,168 | 2.4% | |
| 합 계 | 47,770 | 100% | 11,380 | 100% | 31,897 | 100% | 91,047 | 100% | |

주 : 2009년 9월말 기준임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다. 금융권역별 자산관리계약 현황

금융권별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의 적립금 규모를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으로 구분하여 보면, 신탁계약이 보험계약에 의한 자산관리계약의 적립금 규모 비중보다 35.6%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탁계약으로 체결된 적립금 규모는 6조 1,820억원인 반면 보험계약에 의한 적립금 규모는 2조 9,309억원으로 나타나, 신탁계약의 비중이 보험계약의 비중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 형태별로 볼 때 DC형 퇴직연금과 IRA 기업형 은 신탁계약의 비중이 보험계약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에 의한 적립금 규모가 각각 3조 2,672억원과 2조 1,79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6> 금융권별 자산관리계약 체결 성과

(단위: 억원, %)

| | | DB형 | | DC형 | | IRA기업형 | | IRA개인형 | | 전체 | |
|----------|--------|--------|------------------|--------|------------------|--------|------------------|--------|------------------|--------|------------------|
| | | 금액 | 비중 ¹⁾ | 금액 | 비중 ¹⁾ | 금액 | 비중 ¹⁾ | 금액 | 비중 ¹⁾ | 금액 | 비중 ²⁾ |
| 신탁 계약 | 은행 | 28,013 | 58.1 | 13,868 | 28.7 | 2,998 | 6.2 | 3,378 | 7.0 | 48,257 | 52.9 |
| | 생보 | 1,102 | 81.8 | 244 | 18.1 | 0 | 0.0 | 1 | 0.1 | 1,347 | 1.5 |
| | 증권 | 6,118 | 50.1 | 5,814 | 47.6 | 9 | 0.1 | 275 | 2.2 | 12,217 | 13.4 |
| | 소계 | 35,233 | 57.0 | 19,926 | 32.2 | 3,007 | 4.9 | 3,654 | 5.9 | 61,820 | 67.8 |
| 보험 계약 | 생보 | 19,381 | 80.9 | 3,279 | 13.7 | 58 | 0.2 | 1,242 | 5.2 | 23,959 | 26.3 |
| | 손보 | 4,086 | 76.4 | 1,093 | 20.4 | 8 | 0.2 | 161 | 3.0 | 5,349 | 5.9 |
| | 소계 | 23,467 | 80.1 | 4,372 | 14.9 | 66 | 0.2 | 1,403 | 4.8 | 29,309 | 32.2 |
| 합계 | 58,700 | 64.4 | 24,299 | 26.7 | 3,073 | 3.4 | 5,057 | 5.5 | 91,129 | 100.0 | |

주 : 1) 2009년 9월말 기준임

2) 비중1)은 해당 업권내 연금형태별 점유율, 비중2)는 업권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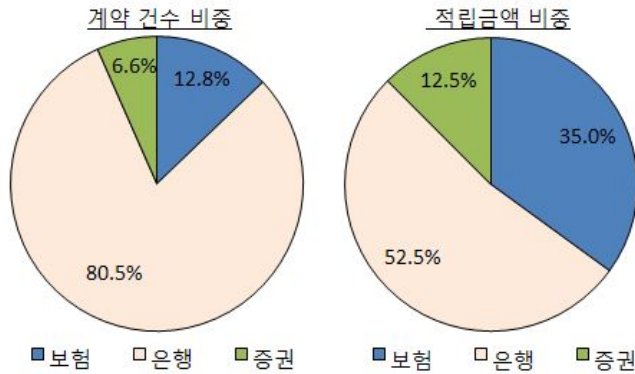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2. 시장특징

가. 계약당 적립금액

금융권역별 퇴직연금시장에서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은행은 계약건수 점유율이 월등히(80.5%) 높은 반면 적립금 운용 점유율(52.5%)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보험(12.8%) 및 증권(6.6%)은 계약건수의 점유율보다 적립금액의 점유율이(32.0%, 12.5%)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3> 금융권별 계약건수 및 적립금 비중



이는 금융권역별 퇴직연금제도 체결 계약당 적립금 운용금액이 은행이 타 금융권에 비해 가장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당 적립금 운용금액은 보험이 약 3억 6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증권이 약 2억 5천만원, 은행이 8천 6백만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7> 금융권별 계약 당 운용금액

(단위: 만원)

| 보험사 | 은행 | 증권사 | 전체 |
|--------|-------|--------|--------|
| 35,908 | 8,574 | 24,847 | 13,1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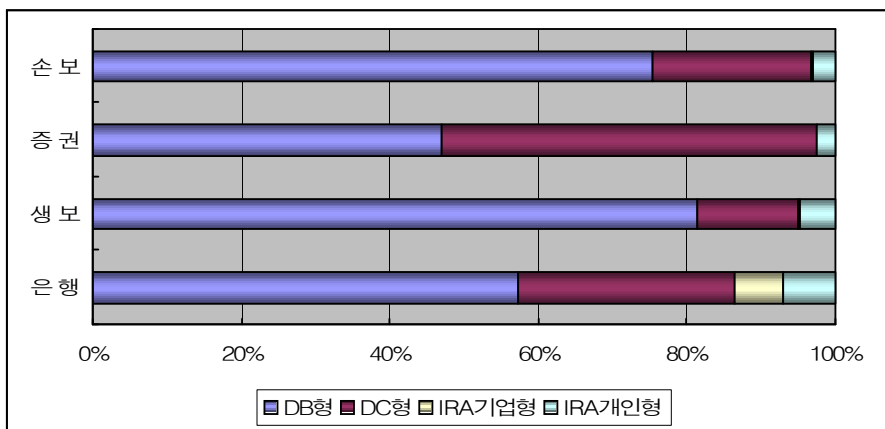
나. 제도 유형별 특징

금융권역별 두 번째 특징은 퇴직연금시장이 DB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DB형 시장은 보험권과 은행권간의 경쟁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퇴직연금시장에서 제도 유형별 각 금융권의 특성을 살펴 보면 퇴직연금 적립금(누적)기준으로 보험사는 DB형, 증권사는 DC형 위주로

운영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계리에 기초한 장기보험상품 운영경험을, 증권사가 자산 운용을 통해 축적한 경쟁력 등을 영업에 활용한 결과이며, 증권사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계약이 많아 DC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II-4> 금융권별 제도유형 적립금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2009년 9월말)

개인퇴직계좌(IRA)는 은행권 위주의 경쟁양상이, DC형 퇴직연금은 은행과 증권사간의 경쟁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DC형 퇴직연금 및 IRA에서의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시장의 경우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한 DC형 퇴직연금시장에 증권사가 공격적인 경쟁전략의 태도를 보이는 등 DC형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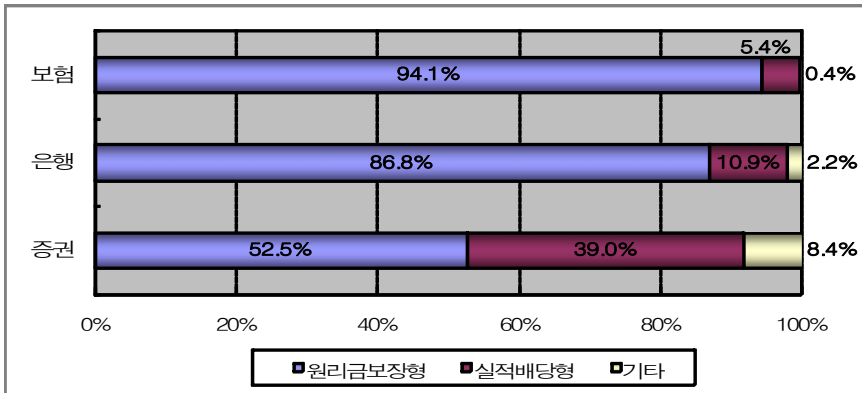
다. 운용상품의 특징

우리나라의 경우 엄격한 적립금 규제 영향 및 원리금보장중심의 경쟁심화

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과도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도 이에 따라 원리금보장형상품 도입·개발에 적극적이다. 또한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미흡 등으로 퇴직연금계약의 대부분은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영세한 소기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용상품별 운용실태는 원리금보장형은 은행, 보험, 증권 순으로, 실적배당형은 은행, 증권, 보험 순으로 운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은행권 및 증권사, 보험권 모두 원리금보장형 상품중심으로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은 보험과 유사하게 원리금보장형 중심(86.3%)으로 적립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보험권(5.4%)에 비해 은행(10.9%)의 실적배당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증권사도 원리금보장형상품의 적립금 비중이 52.5%로 가장 높으나,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적립금의 비중이 3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5>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상품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2009년 9월말)

원리금 보장형은 예·적금이 전체에서 51.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금리확정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인 운영상품의 비중을 살펴보면, 예·적금은 은행

이 88.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보험의 경우 7.4%의 비중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금리확정형보험은 보험이 56.7%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운용상품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은행의 경우 0.2%의 비중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증권사의 경우 채권형펀드에 38.9%를 운용하고 원리금보장형 ELS에 33.0%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8>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상품 상세 비중

(단위: %)

| 구 분 | 상품유형 | 전 체 | 보 험 | 은 행 | 증 권 |
|------------|----------|-------|-------|-------|-------|
| 원리금 보장형 | 예·적금 | 51.4 | 7.4 | 88.5 | 22.7 |
| | 금리확정형보험 | 20.5 | 56.7 | 0.2 | 1.1 |
| | 금리연동형보험 | 11.1 | 30.8 | 0.1 | 0.1 |
| | 국공채 | 0.1 | 0.0 | 0.0 | 0.5 |
| | 원리금보장ELS | 4.1 | 0.7 | 0.0 | 33.0 |
| 실적 배당형 | 주식형펀드 | 0.4 | 0.1 | 0.6 | 0.7 |
| | 혼합형펀드 | 0.1 | 0.0 | 0.2 | 0.2 |
| | 채권형펀드 | 10.6 | 1.8 | 10.4 | 38.9 |
| | 기타펀드 | 0.3 | 0.0 | 0.0 | 2.9 |
| | 실적배당형보험 | 1.3 | 3.6 | 0.0 | 0.0 |
| 전 체 | | 100.0 | 100.0 | 100.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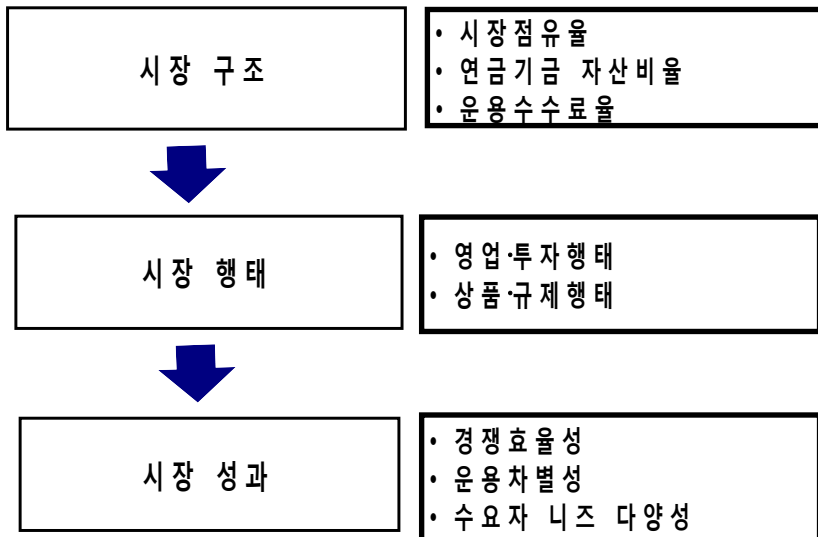
주 : 2009년 9월말 기준(기타 제외)

3. 시장평가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외형적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시장의 예상규모(2015년 88조원)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2009년 9월말 현재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10%대 수준이며, 퇴직연금 적립금 비율 역시 GDP 대비 3.8%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향후 제도 변화 영향 등으로 퇴직연금시장의 구조 변화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엄격한 투자규제, 계약형 지배구조 도입 등에 기초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시장구조(Market Structure), 시장행태(Market Conduct), 시장성과(Market Performance) 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림 11-6> 퇴직연금시장의 구조·행태·성과



가. 시장 구조

1) 시장점유율

중소형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시장 진출 저조 및 대형 금융회사의 공격적인 시장 선점 전략으로 인해, 대형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은행은 전국적 지점망을 통해 대기업 및 해당 지역 중소기업 등 다수 가망고객을 확보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시현하고 있다. 예대마진중심의 전통적 수입원 감소에 따라 수수료와 같은 비이자 수익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은행입장에서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인식하고 있다.

<표 11-9> 상위 5개 은행의 적립금 운영 현황 (2009년 9월 기준)

| | 은행권계 | 우리 | 신한 | 국민 | 농협 | 기업 |
|------------|--------|-------|-------|-------|-------|-------|
| 적립금(억원) | 47,770 | 8,673 | 8,891 | 9,252 | 5,239 | 5,030 |
| 보험권 대비 (%) | 66.8% | 27.2% | 27.9% | 29.0% | 16.4% | 15.8% |
| 금융권 대비 (%) | 52.5% | 9.5% | 9.8% | 10.2% | 5.8% | 5.5% |

자료 : 노동부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

2) 연기금자산 비율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중소형 기업중심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져 퇴직연금제도 도입기간에 비하여 퇴직연기금 규모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GDP대비 연기금자산비율은 3.8%에 불과하여 OECD 30개국 중 26위의 낮은 수준이다.

<표 II-10> GDP 대비 연기금자산 비율 (2008년 기준)

(단위: %)

| 한 국 | 주요국 | | | |
|-----|------|------|------|-------|
| | 미 국 | 영 국 | 캐나다 | 호 주 |
| 3.8 | 78.4 | 79.1 | 53.5 | 119.1 |

주 : 연기금은 사적연금(퇴직+개인) 기준임.

3) 운용수수료율

퇴직연금제도 시행이후 금융권역 구분 없이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를 보여 과열된 수수료 인하경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수료 인하는 주로 각 권역별 선도기업이 먼저 변경하면 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 인하는 가입자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으나, 시장선점을 위한 역마진성 수수료 인하 경쟁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영부실과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져 가입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부작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 II-11> 퇴직연금의 운용 및 관리 수수료율

(단위: %)

| | 운용관리수수료율 | | | 자산관리수수료율 | | |
|-----|----------|----------|----------|----------|----------|----------|
| | 2005.12 | 2007.12 | 2009.6 | 2005.12 | 2007.12 | 2009.6 |
| 보 험 | 0.2~0.6 | 0.2~0.5 | 0.2~0.5 | 0.4 | 0.3 | 0.25 |
| 은 행 | 0.3~0.5 | 0.2~0.5 | 0.2~0.4 | 0.4 | 0.3 | 0.3 |
| 증 권 | 0.2~0.4 | 0.2~0.38 | 0.1~0.33 | 0.2~0.4 | 0.2~0.38 | 0.1~0.25 |

자료 : 황성관(2009. 9), p.10

나. 시장 행태

1) 영업행태

시장세분화에 따른 퇴직연금 영업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수익성, 차별화된 서비스 등에 기초한 영업보다는 퇴직연금시장 선점차원에서 금리위주의 양적 성장(선점전략)에 주력하는 영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도입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인식하에 “제도(Process)” 중심의 영업이 아닌 “금융상품” 중심의 영업 환경을 보이고 있다. 즉 금리 및 수수료 등 가격중심의 영업, 거래 및 고객관계 중심의 영업이 이루어지는 등 주로 기존 고객관계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장차별화에 의한 서비스 경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투자행태

운용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투자리스크 증대, 신탁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부족,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감안하여 양적규제중심의 적립금 운용규제방식인 포지티브방식의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포트폴리오의 조합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단순하며 근로자 및 기업의 니즈에 부합한 투자운용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투자운용에 한계가 존재하며 단순히 투자의 안전성에 초점에 맞춘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상품조합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II-12>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영형태 및 시장평가

| 구 분 | 운영형태 | 시 장 평 가 |
|------|-------------------------|--|
| 영업형태 | - 가격경쟁중심 - 양적경쟁중심 | -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문성 및 서비스 차별성 미흡 - 금리 및 수수료 등 가격중심 경쟁체제로 전환 |
| 투자형태 | - 비율규제중심 - 건전운영중심 | - 이중삼중의 엄격한 투자규제로 운용상품 다양성부족 - 건전성중심의 원리금보장형 운용(운용포트폴리오한계) |
| 상품형태 | - 획일적상품중심 - 비계리적상품중심 | - DB형, DC형 중심의 획일적상품구조로 상품선택폭제한 - 연금기능보다 저축기능 성격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
| 규제형태 | - 진입규제중심 - 사전규제중심 | - 시장기능보다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형태로의 전환 - 계약형 지배구조의 적용에 따른 건전성중시 규제 |

3) 상품형태

법정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퇴직연금제도가 임의가입형태로 도입되어 퇴직연금제도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퇴직률, 예정이율, 승급률 등 계산기초율에 의해 연금비용을 추정하고 기여율을 확정하는 전통적 퇴직연금제도 형태와 많은 괴리를 보여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이 획일적이며 경직적이다. 즉 단순한 DC형, DB형, 개인퇴직계좌(IRA)형 퇴직연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Cash Balance형 퇴직연금 SEP¹⁰⁾, SIMPLE IRA¹¹⁾등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10)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는 기업이 IRA의 보험료를 각출하는 방식으로 각출 수준을 매년 조정 가능

11)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IRA는 100명 이하의 영세기업의 노·사 쌍방이 보험료를 분담하여 각출할 수 있는 방식

4) 규제행태

우리나라 규제형태는 진입규제 및 양적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배구조 또한 기업과 금융회사가 일대일 계약을 하는 계약형 지배구조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컨설팅사 등 퇴직연금 운영의 중간매체 존재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입각한 퇴직연금 운영환경이 형성되기 어려운 여건을 지니고 있으며, 사후적 규제가 아닌 사전적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건전성 중심의 엄격한 규제체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완화의 보완조치인 수탁자 책임 및 수급권 보호 등과 같은 근로자 수급권 보호 장치는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시장 성과

먼저 경쟁 효율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시장의 행태가 가격 및 양적 경쟁중심 양상을 보여 금융회기간 경쟁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시장구조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영체계 및 운영능력보다 단기적인 운용성과에 기초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기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운영 차별성 측면에서 엄격한 상품 및 투자 규제, 그리고 계약형 지배구조의 지향 등으로 서비스, 자산운용, 상품개발 측면에서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영능력 제고에 한계로 작용되고 있다. 즉,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한 체계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특화된 분야에서 차별화된 운용성과를 발휘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 시킨다는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수요자인 근로자 및 기업 니즈를 감안한 제도설계, 자산운용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자 니즈의 다양성을 적기에 충족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즉, 수요자의 니즈가 적극 반영된 제도변화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아 획일적이고 정태적인 수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요자 니즈의 다양성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